

(2) 사업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3)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따른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출시 적용되는 용적률의 명확화(영제16조의2)

(1)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택지개발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부담금의 산정을 위한 용적률은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용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이 건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고, 평균용적률을 산정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기간 내(사업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

(2) 단독주택만이 건립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건립되는 용

지의 평균용적률을 적용하고, 평균용적률의 산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결정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하되, 적용되는 용적률의 차이에 따른 부담금액의 차액은 추후에 정산하도록 함.

(3)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을 위하여 적용되는 용적률을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6년 3 월29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 덕 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관 이 용 섭**

●대통령령 제19429호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요정보제공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법 제4조의2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표시·광고내용의 실증과 관련하여 실증자료의 요청, 심사 및 심사결과에 따른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 제명 “(범위반사실의 공표방법 등)”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범위반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동조제2항중 “범위반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6조에 따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율심의기구등을 운영하는 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격 없는 사단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자의 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3. 심의대상
4. 심의기준
5. 자율심의기구등의 설립근거

②제9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각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조제2항제1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2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고, 제6조제2항중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9조제1호중 “전기통신사업법”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보호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민법”을 “민법”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 표]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1항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1.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법 제3조제1항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상품(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출액(매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 매출액”이라 한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비고 3.에 따른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법 제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 예산액의 100분의 5 이내. 이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비고 : 1.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 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시일 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2. 제2호의 경우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예산액이 편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예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은 다음 표와 같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8 초과 1천분의 10까지
중대한 위반행위	1천분의 4 초과 1천분의 8까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 (1)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 (2)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정보제공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94호 2005. 12. 29. 공포, 2006. 3. 30.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위원의 임기 및 운영 (영 제3조의2 신설)
 - 중요정보제공협의회의 위원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의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함.
- 나.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는 자의 신고 등(영 제16조의2 신설)
 - (1) 법률에서 자율심의기구 등을 운영하는 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사항 및 신고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2) 신고사항은 신고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심의대상, 심의기준 및 자율심의기구 등의 설립근거 등으로 하고, 신고방법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함.
 - (3) 자율심의기구 등의 운영이 활성화되어 사업자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다. 과징금부과기준 매출액을 법률위반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 (영 별표)
- (1)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시 그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총매출액으로 함으로써 법률의 위반과 관련이 없는 매출액에 대하여서도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2) 과징금부과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한 기간 동안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 등으로 함.
 - (3) 합리적인 과징금액의 산정으로 과징금에 의한 제재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